

정정신고(보고)

2024년 2월 23일

- 정정대상 공시서류 : 투자설명서
-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년 5월 15일
- 정정사유
 -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
 - 위험등급 변경(2등급 → 3등급)
 - 수익률 변동성 변경(18.82% → 10.06%)
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(2023.02.20)
 -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변경 반영
 -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(2024.02.13)
 -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
- 정정요구·명령 관련 여부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
표지	2등급(높은 위험)	3등급(다소 높은 위험)
투자비용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
투자실적 추이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과세	-	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	<신 설>	2024.02.23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구의 연혁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- 위험등급 변경(2등급 → 3등급) - 수익률 변동성 변경(18.82% → 10.06%)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(2023.02.20) -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변경 반영 -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(2024.02.13) -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
5. 운용전문인력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<신 설>	<p>1) 증권의 대여 :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</p> <p>가. 수익률 증진 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합니다.</p> <p>나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</p> <p>2) 증권의 차입: 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 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 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</p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	<신 설>	<p>증권대차 거래 위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	2등급(높은 위험)	3등급(다소 높은 위험)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수익률 변동성: 18.82%	수익률 변동성: 10.06%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-	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1. 재무정보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. 연평균 수익률 나. 연도별 수익률 추이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.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3. 기타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 나. 주요업무(2)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(의무)	정정전1)	정정후1)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
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다.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	정정전2)	정정후2)

정정전1)

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

투자설명서가 법령·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/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/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/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/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

정정후1)

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

- 투자설명서가 법령·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
-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
-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
-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
-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

정정전2)

평가항목	운용에 대한 기여도	주문체결능력	비용 또는 수익	정보제공 및 settlement	합계
항목	50%	15%	10%	25%	100%

가중치					
-----	--	--	--	--	--

정정 후2)

평가항목	자산분석서비스 의 유용성 (운용 기여도)	주문집행능력	비용 또는 수익	합계
항목 가중치	60%	20%	20%	100%

8.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

가. 집합투자증권신고서

전자문서 : 금융위(금감원) 전자공시시스템 → <http://dart.fss.or.kr>

나. 투자설명서

전자문서 : 금융위(금감원) 전자공시시스템 → <http://dart.fss.or.kr>

서면문서 :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 (전화번호, 홈페이지 주소)

9. (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): 해당사항 없음

※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(청약일 이후)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에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본문]

투자설명서